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24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1. 12. 14.

판결 선고2022.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9지분에 관하여 2021. 6.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8. 18. 접수 제288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양수금 10,851,327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5. 25.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은 2021. 6. 24. 사망하였고, 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아내인 F, 자녀인 D와 피고들이 있었는데, 그 중 D는 2021. 7. 5.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1. 7. 3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1. 8. 18. 피고들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D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법정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2/9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이전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나. 판단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우선 D는 상속인 중 1인의 지위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수리 심판을 받음으로써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 자체에서 아예 배제된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완수

별지